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78

발의연월일: 2021. 7. 7.

발 의 자:정찬민·송석준·양금희

엄태영 • 유의동 • 윤창현

이종성 • 이주환 • 지성호

태영호 · 한무경 · 허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의 공급 부족 문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등 각 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반도체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시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 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24조의2(반도체시설 투자에 대 |
| | 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시설 |
| | <u>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u> |
| |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
| | 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 |
| |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 |
| | 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
| |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
| |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 |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
| | <u>다.</u> |
|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
| |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 |
| | 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
| |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
| |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 |
| | 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 |
| | <u>다.</u> |
|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
| |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 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 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 3. (생 략)

-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수있다.
- ③ ~ ⑩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 <u>약 안나.</u>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 |
| 자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 |
|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 <u>한다.</u> |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 |
| |
| 제24조, 제24조의2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
| |
| <u>제24조, 제24조의2</u> |
| |
| |
| |
| |
| |
| |
| <u>.</u> |
| ③ ~ ⑩ (현행과 같음) |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① |
| |
| |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 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 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 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 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 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 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 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 <u>제24</u> |
|------------|
| 조, 제24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 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 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 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 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 ② |
|---------------------|
| |
| |
| |
| |
| <u>제24조, 제24조의2</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 | |
|------------------|------------|
| 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